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3. 6. 27.

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5월 4일

나. 발 의 자: 남완현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 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6. 19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남완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의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#### ○ 본 개정규칙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직무대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발의한 안전임.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**안 제2조(법정대리)**에서 전문위원의 사고 시 업무분장에 의한 소관상임위원회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의 사고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업무 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의 사고로 인한 법정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,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남완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5. .

발의자: 남완현, 유승용, 김지연

우경란, 이순우 의원(5인)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의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이하 “국장”이라 한다)의”를 “(이하 “국장”이라 한다) 및 전문위원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업무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법정대리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또는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 국장(이하 “국장”이라 한 다)의 결원, 출장, 휴가, 그 밖의 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 2 조 ( 법 정 대 리 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(이 하 “국장”이라 한다) 및 전 문 위 원 의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</u> <u>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업</u> <u>무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</u> <u>원이 대리한다.</u></p>